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http://꼬꼬아찌.kr/\]](http://꼬꼬아찌.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whwogus05@naver.com]

[꼬꼬아찌]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세경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식회사 세경에프앤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부산 금정구 공단로 81(금사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51- 645 - 8171]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51- 522 - 522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51- 645 - 817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세경에프앤비	꼬꼬아찌	부산 금정구 공단로 81 (금사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 6. 14.	2017. 6. 14.	조재현	051-645-8171	051-522-5226
	법인등록번호	180111-1099620	사업자등록번호	557-88-0065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조재현	세경에프앤비 (꼬꼬아찌)	부산 금정구 공단로 81 (금사동)		
			대표자	대표팩스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재현	051-522-5226	051-522-522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조미영	세경에프앤비 (꼬꼬아찌)	부산 금정구 공단로 81 (금사동)		
			대표자	대표팩스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재현	051-522-5226	051-522-522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조선주	세경에프앤비 (꼬꼬아찌)	부산 금정구 공단로 81 (금사동)		
			대표자	대표팩스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재현	051-522-5226	051-522-522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조재현 /세경유통	-	부산 금정구 공단로 81 (금사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재현	051-623-8171	051-522-5226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87-18-0033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꼬꼬아찌]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꼬꼬아찌	닭을 뜻하는 ‘꼬꼬’에 아저씨의 줄임말인 ‘아찌’를 합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부담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닭요리를 의미합니다.
상 호	꼬꼬아찌 OO점	
상표(서비스표)		상표등록출원 제40-2018-0029794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3,228,789	1,431,967	1,856,822	2,844,964	-111,286	-132,641
2022년	2,714,914	1,399,661	1,315,252	2,701,008	-737,782	-541,569
2023년	1,821,952	841,570	980,381	2,058,856	-330,364	-334,871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재현	대표이사	2008. 1. ~ 현재	세경유통 대표자	업무 총괄
			2017. 6. ~ 현재	(주)세경에프앤비 대표이사	업무 총괄
	조미영	이사	2017. 6. ~ 현재	(주)세경에프앤비 이사	영업 관리
	조선주	감사	2017. 6. ~ 현재	(주)세경에프앤비 감사	감사 업무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꼬꼬아찌 (상표권)	상표	2019. 2. 18. 등록일자	출원 40-2018-0029794 등록 40-1448105-0000	(조재현)	2029. 2. 18. (상동)
꼬꼬아찌 (상표권)	상표	2019. 2. 18. 등록	출원 40-2018-0029796 등록 40-1448106-0000	(조재현)	2029. 2. 18. (상동)
꼬꼬아찌 (상표권)	상표	2018. 4. 1. 등록	출원 40-2018-0029803 등록 40-1464274-0000	(조재현)	2029. 4. 1. (상동)
꼬꼬아찌 (상표권)	상표	2019. 2. 18. 등록	출원 40-2018-0029808 등록 40-1448107-0000	(조재현)	2029. 2. 18. (상동)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꼬꼬아찌] 가맹사업 현황

1. [꼬꼬아찌]를 시작한 날: 1999년 12월¹⁾

2. [꼬꼬아찌] 연혁

가맹본부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세경유통	꼬꼬아찌	조재현	1999.12~2017.6.13.	부산 금정구 공단로 81(금사동)
(주)세경에프앤비	꼬꼬아찌	조재현	2017. 6. 14.~현재	부산 금정구 공단로 81(금사동)
			- 이하여백 -	

3. [꼬꼬아찌] 업종

영업표지	업종	
꼬꼬아찌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치킨, 치킨소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꼬꼬아찌]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7	45	2	38	37	1	30	30	-
서울	5	5	-	4	4	-	4	4	-
부산	14	12	2	13	12	1	9	9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1	1	-	1	1	-	-	-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	-	-
울산	2	2	-	1	1	-	1	1	-
세종	-	-	-	-	-	-	-	-	-
경기	12	12	-	9	9	-	6	6	-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4	4	-	2	2	-	2	2	-
경남	5	5	-	4	4	-	5	5	-
제주	-	-	-	-	-	-	-	-	-

1) 귀사는 2017. 6. 14. 설립된 법인으로 가맹본부를 인수받아 최초 가맹계약일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5. 바로 전 3년간 [꼬꼬아찌]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8	3	-	16	4	45
2022	45	2	-	10	5	37
2023	37	1	-	8	-	30

[꼬꼬아찌]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꼬꼬아찌]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꼬꼬아찌]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꼬꼬아찌]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30	114,274	4,520	352,494	14,075	7,914	316	30곳 산정
서울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9	73,619	3,330	114,880	6,393	16,534	1342	
대구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
울산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
경기	6	165,973	6,035	239,228	10,333	91,590	3,267	-
강원	-	해당없음	-	-	-	-	-	-
충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
전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5	150,968	5,935	352,494	14,075	36,056	1,398	-
제주	-	해당없음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추정매출액을 기입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58%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주류 및 음료수 등 매출 제외)]

[매출액 = 당사와 세경유통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액 × 추정비율(100/58)]

[위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23. 12. 31.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세경에프앤비 주식회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꼬꼬아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꼬꼬아찌]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0개	2,597

8.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9.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꼬꼬아찌]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3]쪽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없음]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1~12/31	-	-	-	
광고	소계	-	-	-	-	
	TV	-	-	-	-	
	라디오	-	-	-	-	
	인터넷	-	-	-	-	
	신문	-	-	-	-	
판촉	소계	-	-	-	-	
	1월 행사	-	-	-	-	
	기타 행사	-	-	-	-	

10.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총렬로 지점]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안락동지점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417	051-521-380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인터넷뱅킹 가입 및 가맹금예치제도 이

용신청하시고, 인터넷 뱅킹 로그인(www.kbstar.com) → 기업 → 기업서비스 → 가맹금 예치제도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는 은행영업일 오전9시부터 1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꼬꼬아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매장 판매 상품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부가세 포함)	5,5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OPEN) 전에 계약 해지된 경우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매뉴얼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영업 개시(OPEN) 후에는 반환 되지 않음	가맹비구성 : 1) 계약금(영업허락의 대가) 20% 2) 최초 계약기간 동안 영업표시 사용료 40% 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20% 4) 점포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20%
교육비 (부가세 포함)	3,300	계약 체결일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개점 전 교육에 한함, 특별교육 등은 별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완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합계	11,800
가맹비(부가세 포함)	5,500
교육비(부가세 포함)	3,3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7, 18, 19, 2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0,310	1,008			
필수설비(정착물)	협력업체	7,210	239	개별계약	개별계약	감리비로 3.3㎡ 당 금 삼십삼만원(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
인테리어(점포 내장 공사)	협력업체	22,000	732	개별계약	개별계약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1,100	36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개별사업자	개별계약	-	-	-	설비, 비품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면적 99.174제곱미터 기준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 제공과 직원파견 및 검수 등 대가로 감리비 3.3㎡ 당 금330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대표이사 (전화:051-645-8171)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중복 여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중도금(3)	잔금
금액(천원)	11,800	총액의 20%	20%	30%	20%	1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 15 일	계약일+ 1월	계약일+ 45 일	계약일+ 2월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	해당없음	-	-	-	-
광고 분담금	-	해당없음	-	-	-	가맹본부 전액 부담하여 인터넷 클릭 광고
관측분담금	-	해당없음	-	-	-	-
교육훈련비	(주)세경에프앤비	파견직원 1인 기준 11만/일	협의	-	-	추가 교육 필요시 , 숙박비 및 교통비는 별도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실사 후 개별 계약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의 후 선정	실사 후 개별 계약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의 후 선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38페이지 참조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POS 사용료	-	해당없음	-	-	-	-

지연이자	(주)세경에프앤비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 관리	상품의 신선도 및 재고 확인	물품 공급 시 마다	배송 직원이 실시
매장 및 서비스	매장 청결도 및 서비스 응대	비정기적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꼬꼬아찌]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세경에프앤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인은 양도하기 60일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서면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낙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가맹비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오픈 관련 판촉비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1,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며 지체없이 상호, 간판,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10일 이내에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나)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꼬꼬아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꼬꼬아찌]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조재현 (세경유통)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계			비공개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꼬꼬아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꼬꼬아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숯불소금구이(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숯불양념+소금구이(뼈반반)			
숯불양념치킨(뼈)			
숯불양념치킨(순살)			
숯불소금구이(순살)			
숯불양념+소금구이(순살반반)			
후라이드치킨			
후라이드양념			
튤립 닭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주류	예외 없이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숯불소금구이(뼈)	19,000 (11호)	본점 사무실에 비치	2023.12월 기준
숯불양념+ 소금구이(뼈반반)	20,000 (11호)	"	"
숯불양념치킨(뼈)	19,000 (750g)	"	"
숯불양념치킨(순살)	19,000 (750g)	"	"
숯불소금구이(순살)	19,000 (750g)	"	"
숯불양념+ 소금구이(순살반반)	20,000 (750g)	"	"
후라이드치킨	18,000 (11호)	"	"
후라이드양념	19,000 (11호)	"	"
튕립 닭발	15,000 (300g)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을 원재료로 숯불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꼬꼬아찌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동일업종이 아닌 다른 브랜드
2. 기존 점포와 개설 점포의 거리가 1,000m이내 이더라도 두 점포 사이에 왕복6차선 이상의 도로가 존재한 경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꼬꼬아찌’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꼬꼬아찌]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6%	4%	0%	0%

※ 기타 오프라인 매출액은 2023년에 폐점된 직영점 매출액이 포함되었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꼬꼬아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1항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1항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7조1항3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1항4호
○ [꼬꼬아찌]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1항5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7조1항6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30조1항1호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0조1항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표시규정, 영업표지, 지식재산권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0조1항3호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0조1항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30조1항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0조1항6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0조1항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0조1항8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필요시 1개월 전 서면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5,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쌍방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계약 내용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조정을 요청	19조 1항
○ 계약 내용 중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의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47조 1항
이하여백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하기 60일 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일 60일 전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051-645-8171)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르는 가맹비는 면제됩니다. 다만, 교육비 및 계약 이행 보증금, 오픈 관련 판촉비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양수인이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승인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의 계약기간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으로 하고 잔여계약기간이후 신규가맹계약을 체결[신규 가맹비:550만원(부가세포함)납부]하며, 양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가맹계약[최초 예치가맹금:11,800천원(부가세포함)납부]으로 봅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리경영인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승계 의사를 표한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 까지 소정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인의 승계 의사 서면 표시 → 가맹본부, 상속인 계약서 체결 → 영업 상속 완료 → 영업개시 전 까지 교육 이수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특별한 사유발생시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의 승인 → 대리경영인의 교육 이수	상동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꼬꼬아찌]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닭고기를 철판에 굽거나 튀겨 조리하고 판매 또는 이에 양념을 더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051-645-817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꼬꼬아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영업	문의: 가맹본부 (051-645-817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부정기적	관리이사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부정기적	관리이사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제품공급 시마다	배송직원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세경에프앤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꼬꼬아찌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광고(인터넷 검색시 가맹점 링크 등) 필요한 비용을 가맹본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판촉행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판촉 행사를 임의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시행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전국)	브랜드 홍보 및 상품광고, 개별 가맹점 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본부가 부담	인터넷 링크 광고 등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가맹점사업자 임의 시행)	증정 행사	없음	증정상품 제작비용 100%	시행하는 가맹점이 전액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팸플렛 등 제작	없음	판촉물 제작비용 100%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통일적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현수막, POP 등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은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매뉴얼-조리방법, 양념(소스) 레시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대여, 공개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5,000,000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8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8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 ~ 47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44 ~ 34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3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1(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	"	"	

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집기·장비 교체비용	0~80% -단,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20% 부담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꼬꼬아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오픈 전 교육	레시피 교육, 점주 교육	실습교육 (지정 교육장)	가맹점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교육비 포함)
	오픈시 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재교육	해당 사유 발생시 사유에 따른 내용	실습교육 (가맹점)	-	필요시 제공, 비용 별도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꼬꼬아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레시피 교육, 점주 교육	5일(40시간)	3,300	교육비용 이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오픈시 교육	2일(16시간)		
수시교육 특별교육 재교육	사전 협의(1회 - 8시간/일)	110	파견직원 1인 1일 기준 단,숙박비 교통비는 별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고, 가맹계약 당사자 외에도 직원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개점 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러한 기한 내 개점 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8조에 따라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 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2023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별첨 - 최근3년간 가맹본부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